

[별표 1]

밀알의집 운영위원회 제 1차 정기 회의

밀알의집 시설운영위원회 제 1차 정기 회의록				
일시	2025. 03. 25.		장소	관가
참석 현황	총원	참석	불참	참석자
	5	5	0	오승준 윤영필 임춘수 양희수 김종철
회의 개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서로간의 안부를 물으며 운영회의 1차 회의를 진행함을 알리며 위원장이 윤영필 원장에게 위임하며 진행의 순서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다.			
회의내용	심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이용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청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종사자와 이용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안건 1호 : 이용인 금전관리 현황 보고</p> <p>양희수 위원 : 2024년 12월까지 이용인의 금전관리 출납부를 첨부파일과 함께 보고합니다. 특히 사항은 교회 헌금과 월요모임 헌금 사용에 있어서 개인별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며 지출 근거에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p> <p>윤영필 위원 : 이용인의 금전관리는 항상 개개인의 동의하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p> <p>오승준 위원장 : 동의합니다.</p> <p>양희수 위원 : 동의합니다.</p> <p>임춘수 위원 : 동의합니다.</p> <p>김종철 위원 : 동의합니다.</p> <p>오승준 위원장 : 모두가 동의하므로 1호 안건도 가결되었습니다.</p>		

심의안건 2호 : 2024년 종결 평가 보고 건

양희수 위원 : 2024년 밀알의집 사업 결과 종결평가를 첨부 파일과 함께 보고 드립니다. 종결 평가를 통해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프로그램 및 개별화를 통해 2025년에도 이용인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오승준 위원장 : 동의합니다.

윤영필 위원 : 동의합니다.

임춘수 위원 :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 동의합니다.

오승준 위원장 : 모두가 동의하므로 2호 안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3호 : 2025년 사업 계획 보고 건

양희수 위원 : 2025년 밀알의집 사업 계획서를 첨부 파일과 함께 보고 드립니다.

오승준 위원장 : 동의합니다.

윤영필 위원 : 동의합니다.

임춘수 위원 :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 동의합니다.

오승준 위원장 : 모두가 동의하므로 3호 안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4호 : 2024년 회계 결산 보고 건

윤영필 위원 : 2024년 회계 결산 보고를 결산 총괄표와 첨부 파일과 함께 보고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것처럼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후원금품 관련, 인건비 관련, 사업비 관련 해서 수입과 지출을 보고 드리고 결과보고는 구청에 3월 28일까지 보고 드리고 홈페이지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 동의합니다.

양희수 위원 : 찬성합니다.

오승준 위원장 : 모두가 동의하므로 4호 안건도 가결되었습니다.

	<p>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p>
	<p>보고안건 1호 : 2024년 보조금 회계 검증 보고 건 운영필 위원 : 밀알의집 2024년 밀알의집 보조금 정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며 정산보고서 및 정산 검증에 관한 보고를 첨부파일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보조금 정산 검증 보고서는 일우 회계사를 통해 2024년 사업 전체에 대한 정산 검증 보고를 마친후 복구청에 운영회의 결과와 함께 보조금 정산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준 위원장 : 보조금 정산 보고에 관련하여 회계사 검증과 함께 검증에 완료 되었기에 보고합니다.</p> <p>보고안건 2호 : 2025년 지정 후원금 사용 건(제수당) 및 건강보험 후원금 지급 건 양희수 위원 : 양희수 위원 : 20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정후원금을 받아 제수당(직책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에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 제수당에서 자부담 발생 비용 약 25,000원을 지출함을 보고 드립니다. 오승준 위원장 : 2025년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동의하는 걸로 알고 가결 하겠습니다.</p> <p>보고안건 3호 : 2025년 밀알의집 예산 확정 보고 건 양희수 위원 : 2025년 밀알의집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어 금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밀알의집은 인건비 620,585,067원이며 관리운영비 34,933,000원 총 585,067,000원입니다. 또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사업으로 추경 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종사자 건강 지원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각 10만원씩 지원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오승준 위원장 : 2025년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동의하는 걸로 알고 가결 하겠습니다.</p>

보고안건 4호 : 2025년 밀알의집 기능보강 사업 신청 건

윤영필 위원 : 2025년에는 밀알의집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새로 이주될 신축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에 신청을 해야 2026년에 기능보강 신축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진행 사항은 도시공사의 토지 사용 허가가 상반기에는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측에 질의와 사용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조율중이며 회원건축사와 함께 설계과정도 조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수 위원 : 윤영필 원장님이 관공서와 설계사와 다방면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축비 또한 시와 조율이 필요하고 자부담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밀알의집 건축에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수 위원 : 주위에서 다방면으로 필요성을 어필해 보겠습니다.

오승준 위원장 : 항상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밀알의집 신축이 잘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두겠습니다.

보고안건 5호 : 광주시 종사자 처우개선안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건

양희수 위원 :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 의해 추진계에 맞춰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고 종사자의 모든 동의를 얻음을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제3기(2024~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1. 개정근거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 「제3기(2024~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행
알림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9763(2024.7.22.)]

2. 개정사유

- 「제3기(2024~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함

3. 개정(안) 예시

- 건강검진 휴가

개 정 안
<p>제00조(건강검진 휴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 직원에게 공가 휴가를 부여한다.</p> <p>②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p> <p>③ 건강검진일 이전에 휴가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p> <p>④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방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포함하여 최대 1일을 넘지 아니 한다.</p>

- 가족돌봄 휴가

개 정 안
<p>제00조(가족돌봄 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1. 미성년 자녀를 둔 직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구 직원이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참여 수업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 등에서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p> <p>2.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70세 이상)를 둔 직원 가. 노부모의 병원 진료 동행 및 입원 간병의 경우. 단, 노부모가 70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장기 질환 등 특이소견이 있을 경우 포함.</p> <p>② 유급휴가일 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p> <p>1. 고등학교 이하(18세 미만 학교밖청소년 포함) 자녀인 경우 연 2일(16시간)이내.</p> <p>2.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법정 한부모가족 종사자는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p> <p>3. 돌봄대상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1일씩 추가 부여.</p> <p>4. 노부모(70세 이상)의 경우 부, 모 통합 최대 2일 이내. 배우자 부모 포함.</p> <p>③ 가족돌봄휴가는 4시간 단위로 분할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p>

사용할 수 있다.

○ 장기근속 휴가

개 정 안

제00조(장기근속 휴가) ① 근속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이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1. 5년 이상~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20년 미만 : 10일
3. 20년 이상~30년 미만 : 10일
4. 30년 이상 : 10일

② 휴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여 한다.

1. 휴가일수 10일 이상에 한해 업무 공백을 고려 5일 간격 분할 사용한다.
2. 휴가는 1개월 전 휴가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
3. 다음 장기휴가 발생일 전까지 사용하며 경과 시 소멸한다.
4. 소멸 이후 3년 경과시부터 장기재직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유급병가제도

개 정 안

제00조(병가) ①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통원 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② 단순 통원치료 가능 질병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 ③ 업무 외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퇴·외출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⑤ 30일 이상 병가 지속시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오승준 위원장 : 광주시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법률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에 좋은 결과입니다. 동의합니다.

	<p>운영필 위원 : 동의합니다. 임춘수 위원 :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 동의합니다. 오승중 위원장 : 모두 동의하므로 5호 안건도 가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보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5년 운영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p>
정책건의	

